

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44호 99. 9. 11)

총 무 위 원 회
1999. 9. 20

1. 심사경과

- 가. 1999. 9. 11 사천시장 제출
- 나. 1999. 9. 13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1999. 9. 15 제3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(환경보호과장 최학립)

가. 제안이유

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적·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·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
- (2)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 원칙
- (3)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 및 고려사항
- (4)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
- (5)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
- (6)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태적·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시, 사업자, 주민들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자연경관의 기본원칙, 기본계획 수립, 지역지정, 관련단체 지원, 심의회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여고 있으며, 「푸른사천」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롭고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임.

검토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의원	내 용	답변자	답 변 내 용
강석순 위 원 강석춘 위 원	○본 조례안에 자연경관심의 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환경기본조례상 환경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.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 지?	환경보호 과 장 최 학 림	○환경위원회와 자연경관심의 위원회는 각각 기능이 상이하므로 중복설치가 아님.
이목년 위 원 강석순 위 원	○시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데도 의원들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음.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차기 임시회시 재차 상정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	환경보호 과 장 최 학 림	○조례가 공포되었다고 주민들의 권리가 바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제한 가능하므로 도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, 이 기회에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람.

5. 심사결과 : 심사서류(차회 임시회시 재상정)

6. 소수의견 : 없음